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상정 1316.11- (전화번호 5-7641-)		전결규정 국장	조 1 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347		시	
시행일자			장	
보존년한				
보조기관	사업국장	권	함	결재 1020. 5. 13 사업국장
	상정과장	김		
	상정계장	10		
기안책임자	유갑서	(기병하) 80. 5. 15	관인생략	
경유	수신처 참조		동	거영 1980. 5. 18
수신			계	64관
참조				
제목	시장법 시행 세칙중 개정령 시행			
1. 관보 제 8539호 (80. 5. 8)와 관련임.				
2. 상공부령 제 599호 (80. 5. 8)에 의거 시장법 시행 세칙중 개정령을 별첨과 같이 실행하오니 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할것.				
첨부 : 시장법 시행 세칙중 개정령 1부. 끝.				
수신처 : 서무 1-17				정철
				관인
				발송

096



88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상정 131611	(전화번호 75-7641)	전경규장 과장 조 7 항 과장 권결사항
처리기간	18		
시행일자	결재		
보존년한	1997. 5. 22		
보조기관	상정과장	전 결	주
	상정계장		
기안책임자	유갑선	80. 5. 22(가방합)	
경유	시내동 대문구 자기동 1036	발송	동
수신	경동시장주식회사 대표 김진후	80. 5. 22	제
참조	시상내 편의시설에 대한 질의(제시)		
제목	1. 80. 5. 16 귀사가 시장법운영에 대한 질의사항을 다음과같이 회신 하니 이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1) 시장내 시장이공자나 동 점포및 종업원을 위한 대중음식점이나 간이 음식을 허가 할수 있는지의 여부 2) 식품위생법에의한 영업허가를 득하고적하는 경우 다수의 점포를 구성된 시장내에 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할수 있는지의 여부 나. 회신 내용 1) 질의 1)항에 대하여 : 시장내부 편의시설은 음식점을둘수 있음. 2) 질의 2)항에 대하여 :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바에따라 허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끝. (* 시행시 "가"항의 질의요지는 생략코자함)		

097



4

수신 서울 특별시장

참조 상정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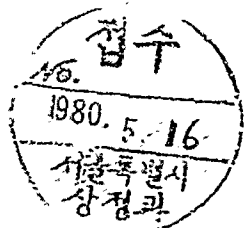
제목 시장내의 편의 시설에 대한 질의

1. 가옥 대장상 용도 표시가 시장으로 되어있는 기존 시장
 에 시장 업무 규정(준칙) 제 13조 "시장에서 거래될 주요 물품의
 종류"에 (시장 이용자나 시장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한)
 대장 음식점이나 간이 음식점의 설치에 관하여는 시장법 제 11조 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부와,

2. 식품 위생법에 의한 식품 위생법에 의한 식품 위생법에 의한 경우
 다수의 점포로 구성된 시장 내의 식품 위생법에 의한 식품 위생법에 의한 경우
 지의 여부

서울특별시
 경동시장주식회
 대표이사 김진
 1980. 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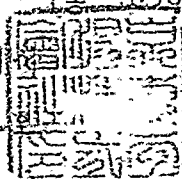
유첨 시장법 운영에 대한 질의 사본 1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036

경동시장주식회

대표이사 김진



서울특별시	
접수	1980. 5. 16
일시	
접수번호	제 1036
주무과	
담당자	
의인	

1. 시장법 운영에 대한 질의

○ 영등포구청정질의 (상정 1311-78)
78.1.7

1. 지하 1층과 지상 3층인 구로 시영아파트 단지내 상가
들 건립하기 위하여 시장개설허가신청이 있는바 시장업무 규
정(준칙) 제13조 시장에서 거래될 주요 물품의 종류에
음식점, 목욕탕, 미용실, 이공실, 재파점, 휴게실, 병원등을 규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시설의 영업장소들 제외하고 개장허가 처리한다면 부
분적인 시장의 개장허가로 시장현대화 계획에 따른 구획된
단일화 건물이 되지 않고 복합건물이 되는것임으로 시장개장
허가 처리 여부

○ 서울특별시시장응답 (상정 1311-52)
78.2.1

1. 시장업무규정(준칙) 제13조에거 규정안하와 같이 거래
될 주요 물품의 종류만을 명시할것.

2. 시장법과 동시행행에 관한 시장의 개념에 부합되고 건
물의 허가요건과 시설이 완비되어 음식점, 목욕탕, 미용실
등 수용할 수 있는 현대적 건물이라면 이들을 포함하여 개
장허가하여도 가능하다고 봄.